

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제 정	2011.	3.
개 정	2013.	1.
개 정	2015.	1.
개 정	2016.	2.
개 정	2016.	7.
개 정	2018.	10.
개 정	2020.	9.
개 정	2020.	11.
개 정	2021.	4.
개 정	2024.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특별채용 전임교원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 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재직한 후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특수 분야의 전공자 및 외국인을 초빙하는 경우
3. 해당 분야의 명성이 높은 석학 또는 연구실적과 수준이 탁월한 교수를 초빙하는 경우
4. 해당 전공의 특성화 또는 본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6. 기타 해당 학과의 긴급한 사정으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절차) ① 전임교원의 특별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학과(부)장, 학장 또는 교무위원의 추천
2. 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 심의
3.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4. 총장의 임용제청

②필요한 경우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특별채용심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①총장은 교원의 특별채용을 위하여 특별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특별채용심사위원회는 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전략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산학협력중점교원 채용에 한함)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개정2015.01.12.)(개정2016.02.01.)(개정2016.07.01.)(개정2018.10.08.)(개정2020.09.10.)(개정2020.11.19.)(개정2021.04.22)(개정2024.01.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조 (교원의 직위 및 임용계약) 특별채용 전임교원의 직명 및 근무조건 등 임용계약은 이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하고, 필요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하며,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1.18. 우송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